

■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13) 시행 안내 ■

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(실직·폐업)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[유형13]을 신설합니다.

◆ [유형13] 지원 기준

기본자격 요건	추가자격 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부 졸업생 (단, 대학원 재학생 가능) •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•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(단,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) • 부실채권 미보유자(단,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) • 만 35세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1. 1. 1. 이후 실직·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• 실직자 : 신청일 현재,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• 폐업자 : 신청일 현재, 폐업상태인 자 (단,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)

◆ 신청기간

- 2021. 1. 6.(수) ~ 2021. 12. 31.(금)까지
- ※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,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◆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

-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**최장 3년 상환유예**
- 상환방법: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(4년간) 또는 만기 일시 상환(4년후)
- ※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(4년 동안)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

◆ 신청 방법

- 홈페이지 : 학자금대출 > 학자금뱅킹 >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> 유예대출 >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
- 모바일앱 : 학자금대출 > 특별상환유예대출 > 신청하기
- 서류제출 방법: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(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)

◆ 제출 필요서류

- 대학(학부) 졸업증명서
-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
- ※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'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' 제출 필요

《 실직·폐업자 부/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》

실직·폐업여부 충족	제출서류
① 신청일 현재,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(또는 실업급여 수급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(초본) ■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■ 가족관계증명서* * 단,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
② 신청일 현재, 폐업상태인 자 (단,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(초본) ■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■ 폐업사실증명서 ■ 가족관계증명서* * 단,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

◆ 신청문의

-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-2000